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488호 2017. 2. 2(목)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362호 사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
- 사천시 조례 제1363호 사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 6
- 사천시 조례 제1364호 사천시 의료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 ---- 12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17-151호 보상계획공고 ----- 18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 831-2216 / FAX 831-6012

사 천 시 공 보

제488호(2)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6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2월 2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지원하여 곤충농가의 소득증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애,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88호(3)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써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곤충산업 육성 세부 실천계획) 시장은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유통·가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시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 천 시 공 보

제488호(4)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① 시장은 관상·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시장은 지역경제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2. 식·약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토착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등

제9조(곤충산업의 사업수행)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곤충과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3. 곤충산업 관련 기술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4.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축제나 행사
5. 곤충농가와 곤충산업을 하는 업체의 곤충 사육,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6.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수행

사 천 시 공 보

제488호(5)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88호(6)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6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2월 2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우리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의 발굴·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향토음식”이란 「우리 지역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향토성 있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시장이 지정한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88호(7)

3. “관광상품화”란 향토음식을 제조·가공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맛과 멋을 제공하고 유통하는 것을 말한다.

4. “상표”란 다른 업체와 구별되도록 식품 제조·가공업체, 대학, 연구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서 생산한 향토음식의 제품 포장지에 표기하고 사용하는 문양과 문자를 말한다.

제3조(향토음식 심의위원회) 향토음식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향토음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의 지정과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의 평가와 경진대회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 상표·서비스표의 출원·등록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환경위생과장, 미래농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식품·관광 관련 대학교수

사 천 시 공 보

제488호(8)

2. 음식문화 연구나 외식업 관련 민간단체의 장
3. 요리전문가, 식품관련 단체나 업계의 대표 등 향토음식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연임의 제한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 무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향토음식의 발굴·지정 등) ① 시장은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과 보전을 위하여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음식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488호(9)

제11조(향토음식점의 지정)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이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향토음식점에 지정업소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관광상품화할 수 있다.

제12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
2. 향토음식을 조리·제조·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육성지원 등) ① 시장은 향토음식 취급업소와 향토음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의 발굴·육성 및 보전을 위한 사업
2. 향토음식의 연구·조사
3. 향토음식에 관한 교육, 홍보
4. 향토음식 관계 기관·단체의 육성
5. 향토음식 관련 각종 행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 천 시 공 보

제488호(10)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4조(향토음식의 표준화·상품화) ① 시장은 향토음식을 발굴·육성 및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향토음식 요리법 표준화
2. 향토음식 조리백서 발간
3. 향토음식 보급·전수 등을 위한 교육
4. 향토음식 홍보자료 제작
5. 향토음식 관광상품화
6. 향토음식 특허, 상품등록 등 소유권 확보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할 수 있다.

제15조(상표·서비스표의 출원·등록) ① 시장은 향토음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상표·서비스표(이하 “상표 등”이라 한다)를 출원·등록할 수 있다.

② 상표 등은 공개모집하거나 전문업체의 용역을 거쳐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③ 상표 등은 문자와 문양 또는 문양만으로 출원하거나 등록할 수 있다.

제16조(상표 등의 사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 등에 상표 등의 사용을 인정하고, 적극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 지정한 품목이나 지정품목을 보급하는 업소
2. 향토음식의 가공 상품화를 위하여 지정·협약한 식품 제조·가공업체, 대학 또는 연구기관(단체 등)

사 천 시 공 보

제488호(11)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품목이나 업소(업체 등)

제17조(상표 등의 사용제한) 시장이 향토음식 보급 업소나 향토음식점 등으로 지정하지 않은 업소 등이 이 조례로 정한 향토음식점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할 경우 시장은 즉시 철폐,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향토음식 보급·전수 교육) ① 향토음식 조리법을 전수받으려면 시에서 운영하는 향토음식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음식 관련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조리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고,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88호(12)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6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2월 2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옷 수거사업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 및 헌옷의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천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헌옷의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사 천 시 공 보

제488호(13)

2. 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3조(사업자의 책무) 의류 수거 및 헌옷 재활용 사업자는 의류수거함 관리와 헌옷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류 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시장은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시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류수거함 관리·운영) ① 시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 기업 또는 그 관리·운영에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로 지정된 자(이하 “관리·운영자”라 한다)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운영자가 불성실하게 관리·운영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6조(관리·운영자업무 등)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을 받아 적합할 때 의류수거함의 관리·운영자로 지정하고, 관리·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88호(14)

1. 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
3. 의류 수거함 주변의 청결유지
4. 시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준수

제7조(관리·운영자 준수사항) ① 관리·운영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운영자는 헌옷수거를 주1회 이상 하되, 수거함이 용량을 초과할 경우 등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③ 관리·운영자는 의류수거함을 시민불편이 없는 적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는 의류수거함의 설치를 자제하여야 한다.

1. 학교주변 보도 및 공원 내
2. 중앙선이 있는 도로변, 2차로 이상 및 6m이상 도로 주변
3. 도로변 사유지
4. 기타 시장이 설치를 금지한 장소 등

⑤ 관리·운영자는 의류수거함의 규격, 재질, 색상, 디자인 등을 시의 실정에 맞게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관리·운영자에게 의류수거함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88호(15)

② 시장은 의류수거함이 파손, 훼손, 색상변색 등으로 민원발생 및 생활환경을 저해할 경우에는 관리·운영자에게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의류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실명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평가 등) ① 시장은 의류수거함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를 연 2회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 평가 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관리·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조치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의 해지
2.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구역의 확대 또는 축소 조정
3. 평가결과에 대한 시정 조치 및 명령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관계 법령과의 관계) ①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할 경우 「도로법」 제61조, 제6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류수거함을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 관리·운영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운영자가 제2항에 따른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가 미상일 경우 의류수거함을 강제 수거하고, 수거 후 30일이 경과할 경우 이를 폐기 처분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88호(16)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진 철거를 제3항에 따른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도로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헌옷 수거함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헌옷 수거함에 대한 제7조제5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10조는 2017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88호(17)

[별지 제1호서식]

의류 수거함 설치·운영 신청서(제6조 관련)

신청인	주 소			
	단체명(성명)		전화번호	
설 치·운 영 기 간				
설 치 장 소(지번)				
설 치 면 적(m ²)				
설 치 규 격 (가로×세로×높이)				
수 거 품 목				

「사천시 의류 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사 천 시 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488호(18)

공 고

사천시 공고 제2017 - 151호

보 상 계 획 공 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목곡소하천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2일

사 천 시 장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목곡소하천 정비공사
- 나.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
- 다. 사업구간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일원
- 라. 공사개요
 - 소하천정비 L=1,365m, 교량 12개소 등
- 마. 사 업 기 간 : 2017.01. ~ 2019.12.31

2. 손실 보상 협의 및 지급시기 : 2017. 2월 이후(추후 개별통지)

3. 보상금 지급 방법

- 가. 계약 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방법으로 전액 현금 지급
- 나. 단, 압류 및 근저당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토지소유자가 해제 후 계약체결 원칙

4.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토지 및 물건 : 붙임 조서 참조

사 천 시 공 보

제488호(19)

5. 열람 및 이의 신청

가. 열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사천시청 건설수도과 하천담당(☎055-831-3270)

다. 토지 및 물건조서 : 사천시청 건설수도과 비치 및 사천시 홈페이지 공고

라. 이의신청 : 토지,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산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규정에 의거 3인(시·도지사과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함.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 ⇒ 보상금산정 ⇒ 보상협의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후 보상금지급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보상금 공탁

다.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천시 건설수도과(하천담당)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별 통지 예정

4. 기타

가. 토지, 물건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중복되었을 경우 보상에서 제외하고, 누락되었을 경우 실사를 거쳐 보상대상에 포함 시킬 예정임.

나. 보상계획은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에 관한 구비 서류 및 보상금내역은 개별 통지 합니다.

다.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건설수도과 (☎055-831-32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488호(20)

편 입 토 지 조 서

○ 공사명 : 목곡소하천 정비공사

연 번	위 치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권리의종 류 및내용	비고
	읍	리	지번		대장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	사천	금곡	95-3	답	49	49	장**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				
2	사천	금곡	98	도	1,319	658	농림축산식품					
3	사천	금곡	146-1	천	1,232	69	경상남도					
4	사천	금곡	95-2	답	201	201	장**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				
5	사천	금곡	146-2	답	35	35	경상남도					
6	사천	금곡	147-3	답	79	79	장**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7	사천	금곡	148-5	답	101	101	정**	경남 진주시 내동로 ***				
8	사천	금곡	96-1	답	204	204	장**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				
9	사천	금곡	148-6	답	24	24	장**	사천시 사천읍 거무실길 ***				
10	사천	금곡	151-1	답	122	122	이**	부산 북구 화명동 ****				
11	사천	금곡	99	구	9,469	1,892	농림축산식품					
12	사천	금곡	152-3	답	224	224	이**	부산북구화명동****				
13	사천	금곡	97-1	답	125	125	김**	사천시 사천읍 백산길 ***	사천농업협동 조합	사천시 사천읍 사천읍성로 51	근저당	
14	사천	금곡	153	도	1,372	599	농림축산식품					
15	사천	금곡	155-5	답	52	52	장**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				
16	사천	금곡	155-6	답	136	136	장**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				
17	사천	금곡	156-4	답	81	81	장**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				
18	사천	금곡	127-1	답	49	49	장**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				
19	사천	금곡	628-5	구	15,005	7,154	농림축산식품					
20	사천	금곡	127-2	답	17	17	장**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21	사천	금곡	134-1	답	32	32	이**	사천시 사천읍 거무실길 ***				
22	사천	금곡	134-2	답	24	24	이**	사천시 사천읍 거무실길 ***				
23	사천	금곡	136-1	답	23	23	이**	사천시 사천읍 거무실길 ***				
소 계					29,975	11,950						

사 천 시 공 보

제488호(21)

연 번	위 치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권리의종 류 및내용	비고
	읍	리	지번		대장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24	사천	금곡	137-1	답	45	45	장**	진주시 상봉동 ***				
25	사천	금곡	138-1	답	7	7	장**	진주시 상봉동 ***				
26	사천	금곡	139-3	답	54	54	장**	진주시 하대동 ***				
27	사천	금곡	139-2	구	83	83	장**	진주시 하대동 ***				
28	사천	금곡	139-1	구	162	162	사천시					
29	사천	금곡	644	도	112	23	국토교통부					
30	사천	금곡	219	도	614	614	농림축산식품					
31	사천	금곡	140	답	1,420	1,420	정**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				
32	사천	금곡	220	구	80	72	농림축산식품					
33	사천	금곡	222-2	답	49	49	장**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				
34	사천	금곡	222-1	구	134	134	사천시					
35	사천	금곡	258-1	구	15	15	사천시					
36	사천	금곡	258-2	답	15	15	장**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				
37	사천	금곡	218	답	1,432	1,432	장**	사천시 사천읍 ***	장**	부산 수영구 망미동***	근저당	
38	사천	금곡	262-1	답	127	127	장**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				
39	사천	금곡	263-1	답	43	43	장**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				
40	사천	금곡	265	구	43	43	농림축산식품					
41	사천	금곡	218-1	답	3	3	장**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				
42	사천	금곡	217	구	956	38	농림축산식품					
43	사천	금곡	264-2	답	163	163	장**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				
44	사천	금곡	264-1	도	266	39	사천시					
45	사천	금곡	356-1	도	51	18	사천시					
46	사천	금곡	355-2	도	110	42	사천시					
47	사천	금곡	626-5	도	105	105	국토교통부					
소 계					6,089	4,746						

사 천 시 공 보

제488호(22)

연 번	위 치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권리의종 류 및내용	비고
	읍	리	지번		대장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48	사천	금곡	355-1	대	342	342	금곡리마을회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				
49	사천	금곡	271-3	답	28	28	장**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	사천농업 협동조합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411-1	근저당	
50	사천	금곡	271-1	답	42	42	장**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				
51	사천	금곡	276	도	1,287	1,268	농림축산식품					
52	사천	금곡	272-8	대	157	157	장**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				
53	사천	금곡	272-7	답	153	153	노**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				
54	사천	금곡	274-1	도	255	255	사천시					
55	사천	금곡	274-2	답	51	51	김**외12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 ***				
56	사천	금곡	277	구	2,789	9	농림축산식품					
57	사천	금곡	287-2	답	21	21	장**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58	사천	금곡	275	도	296	296	사천시					
59	사천	금곡	280-2	답	25	25	장**					
60	사천	금곡	626-8	도	81	16	국토교통부					
61	사천	금곡	375-3	도	115	115	사천시					
62	사천	금곡	375-4	답	29	29	장**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				
63	사천	금곡	281-1	도	143	143	사천시					
64	사천	금곡	281-2	답	21	21	장** 외2인		동고성농업협 동조합	고성군 회화면 배둔로 37	근저당	
65	사천	금곡	282-1	도	39	39	사천시					
66	사천	금곡	282-2	답	6	6	이** 외7인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				
67	사천	금곡	285-2	답	10	10	장**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				
68	사천	금곡	288-1	답	222	222	장**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				
69	사천	금곡	285-1	도	613	613	사천시					
70	사천	금곡	292-1	답	177	177	장**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				
71	사천	금곡	293-1	답	57	57	장**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				
소 계					6,959	4,095						

사 천 시 공 보

제488호(23)

연 번	위 치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권리의종 류 및내용	비고
	읍	리	지번		대장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72	사천	금곡	294-1	답	60	60	정**	사천시 사천읍 거무실안길 **				
73	사천	금곡	295-6	답	66	66	정**	사천시 사천읍 거무실안길 **				
74	사천	금곡	295-7	답	164	164	정**	사천시 사천읍 거무실안길 **				
75	사천	금곡	322	구	312	263	농림축산식품					
76	사천	금곡	295-8	답	161	161	정**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				
77	사천	금곡	325-22	답	75	75	장**	마산시 완월동 ***				
78	사천	금곡	295-9	답	125	125	장** 외3인	진주시 하대동 ***				
79	사천	금곡	325-23	답	62	62	주**	합천군 울곡면 문림길 **				
80	사천	금곡	325-24	답	124	124	장**	부산 북구 화명동 ***				
81	사천	금곡	295-10	답	240	240	장**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				
82	사천	금곡	325-25	답	122	122	장**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				
83	사천	금곡	296	구	2,349	682	농림축산식품					
84	사천	금곡	325-26	답	105	105	장**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				
85	사천	금곡	325-27	답	108	108	장**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				
86	사천	금곡	615-2	도	488	111	국토교통부					
87	사천	금곡	325-28	답	69	69	장**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				
88	사천	금곡	325-29	답	76	76	장**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				
89	사천	금곡	327	구	196	196	농림축산식품					
90	사천	금곡	325-30	답	263	263	장**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				
91	사천	금곡	360-24	답	49	49	장**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				
92	사천	금곡	360-25	답	2	2	장**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				
93	사천	금곡	357	구	933	283	농림축산식품					
94	사천	금곡	358	도	773	13	농림축산식품					
95	사천	금곡	360-26	답	173	173	장**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				
소 계					7,095	3,592						

사 천 시 공 보

제488호(24)

연 번	위 치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권리의종 류 및내용	비고
	읍	리	지번		대장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96	사천	금곡	360-14	답	16	16	사천시					
97	사천	금곡	360-15	답	40	40	사천시					
98	사천	금곡	산80-1	구	1,025	1,025	한국농어촌공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99	사천	금곡	360-16	답	29	29	사천시					
100	사천	금곡	360-17	답	23	23	사천시					
101	사천	금곡	360-18	답	43	43	사천시					
102	사천	금곡	360-19	답	22	22	사천시					
103	사천	금곡	360-20	답	17	17	사천시					
104	사천	금곡	360-21	답	26	26	사천시					
105	사천	금곡	360-22	답	20	20	장대현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316				
106	사천	금곡	360-23	답	57	57	사천시					
107	사천	금곡	359	도	932	932	농림축산식품					
108	사천	금곡	215	유	1,045	99	사천시					
109	사천	금곡	385	구	2,009	63	농림축산식품					
소 계					5,304	2,412						
합 계					55,422	26,795						

사 천 시 공 보

제488호(25)

편 입 토 지 조 서

○ 공사명 : 목곡소하천 정비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단위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권리의종 류및내용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사천읍 금곡리	628-5	감나무	30년생	4	주	농림축산 식품부					
2	사천읍 금곡리	463-1	감나무	20년생	17	주	장**	진양군 금산면 가방리 ***				
3	사천읍 금곡리	460-1	감나무	20년생	14	주	장**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				
			복숭아나무	20년생	1							
4	사천읍 금곡리	355-1	건물	블록 슬래브	115.0	㎡	금곡리 마을회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				
5	사천읍 금곡리	272-8	건물	블록 스레트	89.7	㎡	장**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	장영구	부산 수영구 망미동417-2 1	근저당	
			담장		28.2	m						
			대문	철제	1	식						
6	사천읍 금곡리	288-1	감나무	20년생	1	주	장**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				
			복숭아 나무	20년생	2							
7	사천읍 금곡리	246-1	비닐 하우스	4.6x4.0	18.4	㎡	이**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				
			석류나무	10년생	7	주						
8	사천읍 금곡리	325-30	대추나무	10년생	10	주	장**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				

사 천 시 공 보

제488호(26)

의 견 서	
【목곡소하천 정비공사】	
1.제 목	목곡소하천 정비공사 보상계획에 따른 의견 제출
2.당사자	성 명
	주 소
3.의 견	
4.기 타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7. . . .</p> <p>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p> <p>사 천 시 장 귀하</p>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